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　　정　2009. 9. 11
개　　정　2011. 11. 17
개　　정　2018. 9.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6>

제2조(적용범위) 기술원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평가업무의 범위) 법 제31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술원의 평가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 상담,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접수
2. 평가신청서 검토
3. 현장조사 및 시료분석 의뢰 등 관련 업무
4.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취소 심의
5. 기술검증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 심의
6. 평가협약 체결 및 현장평가 수행
7.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의 사후관리

8.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개정 2018. 9. 6>

9.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평가

10. 신기술 성공불제·장려금제의 기술검증 수행

11. 환경기술실용화지원사업 수행

12. 신기술표시(NET 마크) 제도 운영

13. 신기술의 국내외 홍보

14.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 운영

15. 현장평가기관의 지정 및 감독

16. 평가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17.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범사업 지원

18. 민간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국내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기술에 대한 평가

19. 환경기술검증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대외 협력

20. 기타 환경부장관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2장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등

제4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8. 9. 6>

② 삭제 <2018. 9. 6>

③ 삭제 <2018. 9. 6>

④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을 3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이전 위원회 참여 위원 중 상위점수 및 하위점수 부여자 각 2명씩을 제외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 선정 우선순위는 고시 제5조제5항을 따른다. <신설 2018. 9. 6>

⑤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 후보자 추첨에는 감사업무 담당 직원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기술의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9. 6>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기술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소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 의결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기술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고시 제27조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 후보단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제3장 평가 및 등록절차

제8조(평가절차) 평가업무의 처리절차는 고시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9. 6>

제9조(신청서의 검토) ① 기술원장은 고시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기술보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보유자에 대해 신기술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신청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전체기간은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평가등록비 납부 등) ① 신청인은 고시 제9조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기술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평가등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1.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였을 경우 : 초과 금액
2. 고시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현장조사 자료발송 등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고시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개최 7일 이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자료 발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제11조(현장조사) ① 기술원장은 고시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 참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고시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이해관계인 의견서 검토) ①~③ 삭제 <2011. 11. 17>

④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고시 제4조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기술인증

제13조(관계기관 의견조회)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조사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 9. 6>

제5장 기술검증

제1절 현장평가계획 심의

제14조(현장평가계획 심의) ① 삭제 <2018. 9. 6>

② 기술원장은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심의 시 처리효율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특정 계절 또는 시기를 현장평가기간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제2절 평가협약 및 현장평가

제15조(평가협약의 변경 등) ① 기술원장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평가협약의 일부를 신청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술의 공정 또는 고시 제15조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평가를 취하한 경우
2. 평가대상 시설 또는 공정이 정상상태가 아니어서 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평가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4. 평가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평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③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2차에 걸쳐 평가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협약이 해약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6조(현장평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자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현장평가계획서 및 평가협약을 토대로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평가자는 기술원 직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평가수수료) ① 기술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제2호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의 대가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평가소요일수에 대가기준의 건설 및 기타분야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기술자의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제2항의 현장평가 수행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경비는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측정분석비 등으로 계산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출장여비는 현장평가소요일수와 현지이동에 소요된 일수에 대하여 기술원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측정분석비는 기술원장이 공인된 분석기관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신청인과 분석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8조(평가소요일수) ① 평가소요일수는 현장평가자가 출장하여 직접 검사·확인하는 현장평가소요일수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가공,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자료정리소요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자료정리소요일수는 현장평가소요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10일(이하 “기본일수”라 한다)을 적용하고, 현장평가소요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 5일이 증가될 때마다 기본일수에 2일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료정리소요일수는 최대 2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평가수수료의 납부 등) ① 신청인은 제18조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평가협약 체결 후 현장평가가 실시되기 전까지 기술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평가수수료 납부확인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납부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에는 평가수수료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1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회에는 제1회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평가수수료를 기술원장이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청인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여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가협약을 해약하고 제17조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납부한 평가수수료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3. 현장평가가 완료되어 제17조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납부한 평가수수료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④ 신청인이 영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현장평가비용을 완납한 후 기술검증서 발급이전까지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제3절 현장평가기관

제20조(현장평가기관 통보 등)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장평가기관에 대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 또는 항목의 현장평가 수행이 가능한 현장평가기관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평가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기관이 평가협약을 체결할 경우의 평가수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은 당해 현장평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평가협약 등) ① 신청인은 현장평가기관과 평가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관을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기관의 장은 평가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평가수행계획서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제출 및 보고)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완료시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종합평가

제23조(종합평가) ① 삭제 <2018. 9. 6>

② 삭제 <2018. 9. 6>

③ 고시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조사는 제13조를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4조(사후관리) ① 기술원장은 고시 제23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기술의 활용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1. 11. 17>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취합·정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을 제출한 자는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공종공사의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로서, 현장적용규모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환경신기술 현장적용규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제25조(유효기간 연장 검토 등) ① 고시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장적용시설이 없는 경우
2. 기술원장이 현장에서 현장적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한하여 고시 제21조에 따른 연장평가의 활용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당해년도의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종 설계 변경된 신기술공종공사 기성금액을 활용한다. <개정 2018. 9. 6>

제26조(현장평가자의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현장평가자는 관계법령

및 기술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의 보안 유지) 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이 작성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심의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6>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회 전까지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심의 후에도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간의 산정)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8. 9. 6>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보완기간
2.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기간
3. 고시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답변기간 <개정 2018. 9. 6>
4.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기간
5.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개정 2018. 9. 6>
6. 제16조에 따른 현장평가 기간
7. 그 밖에 신청인이 평가의 연기를 요청하여 평가가 연기된 기간

③ 제24조제4항에 따른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기간에는 신청인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6>

제29조(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기술원장은 평가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 현황, 신기술 검색,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사후평가 결과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을 따른다.

부칙(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1.10.29) 이전에 접수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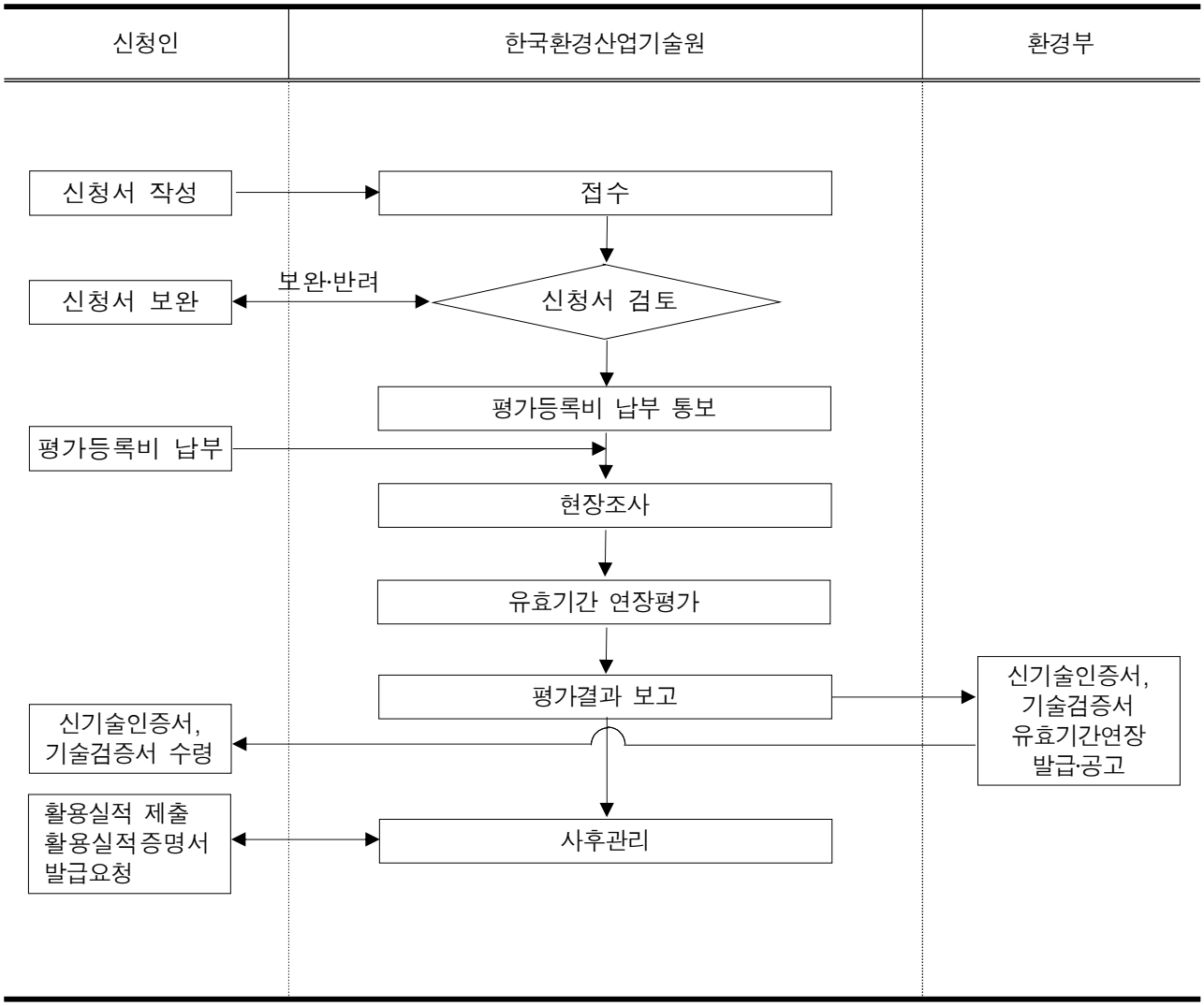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술현장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18. 9. 6>

[별표 2] <개정 2018. 9. 6>

유효기간연장 업무처리 흐름도



별 지 서 식

제1호	신청서 검토의견서
제2호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제3호	현장조사서
제4호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견서
제5호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결서
제6호	관계기관 의견회신서
제7호	<삭 제>
제8호	<삭 제>
제9호	평가수수료 납부확인서
제10호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제11호	<삭 제>
제12호	<삭 제>
제13호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14호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제15호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
제16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연장 관계기관 의견회신서

※ 본 서식은 필요시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검토의견서

신청인	법인명(명칭)	
	성명(대표자)	
신청기술명		
신청구분		[ ] 신기술인증 [ ] 기술검증

신청서 검토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1. 기술보유자 및 신청기술 내용 관련

가	◦신청인(기술보유자) - 지식재산권 등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 신청인이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권자와 동일한가? - 지식재산권에 등재된 권리자 중 신청인 이외의 권리자로부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는 공증받은 동의서가 첨부되었는가? - 공동신청인인 경우 · 신청인이 모두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권자에 포함되어 있는가? · 기술보유권의 공동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적 합 [ ]	보 완 [ ]
나	◦기술의 개발배경 및 연혁 - 작성 여부 확인	[ ]	[ ]
다	◦기술의 원리 - 신기술에 대한 기술의 원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 ]
라	◦공정도 - 공정도 제시, 신기술(또는 핵심기술) 해당 공정 표시 -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사진 포함) - 주요설비(기기) 사양 등이 제출되었는가?	[ ]	[ ]

2. 신기술 인증 관련			
가	◦신기술의 범위 – 신기술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압축하여 제시되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속항으로 제시) – 제시한 신기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적 합 [ ]	보 완 [ ]
나	◦신기술의 요건(심사기준 관련) – 신규성 ·신기술의 내용이 기존기술, 유사기술 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증명되어져 있는가? ·기존기술을 소화·개량한 경우 개량된 기술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 등 ·기술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향상된 효과가 제시되었는가? – 현장적용성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 관리 편의성 등에서 향상된 효과가 제시되었는가? ·환경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기술인가?	[ ]	[ ]
3. 자체 평가 관련			
가	◦자체 평가한 내용의 적정여부 및 타당성 – 신기술범위(또는 핵심기술) 및 입증한 성능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는가? – 그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횟수 등 자체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운전조건이 제시되었는가?	[ ]	[ ]
나	◦자체 평가결과 – 신기술(또는 핵심기술)과 그 성능(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평가결과는 자체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횟수와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등이 일치하는가? ·투입물(유입량), 공정 중 부산물, 생산물(처리량)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일관성 있게 실시되었는가? ·평가결과에는 제시한 결과치가 나오게 된 각 공정별로 운전인자에 대한 운전조건이 제시되었는가? ·단위공정별 오염물질의 거동분석, 영향인자별 제거특성을 제시할 필요성은 없는가? ·경제성은 투자비(시설비, 공사비), 연간 운영비, 처리단가로 나누어 제시되었는가? ·자체 평가 중 생산된 국내 시험성적서는 제시되었는가?	[ ]	[ ]

4. 기술검증 관련(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가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 신기술(또는 핵심기술) 내용에 대한 검증항목 포함 여부와 중요한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여부 - 그 내용은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가 가능한가?	적합 [ ]	보완 [ ]
나	◦검증을 받고자 하는 성능치의 제시 여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능 또는 효율이 제시되었는가?	[ ]	[ ]
다	◦투입량(처리량),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운전조건 등 현장평가 할 때의 조건이 제시되었는가?	[ ]	[ ]
5. 현장적용성 관련 평가대상시설 자료			
가	◦평가대상시설의 설계서 및 운전절차서는 제시되었는가? - 설계시방서의 제시 여부 - 설계계산서에 설계기준, 용량계산서의 제시 여부 - 주요설비 사양에 규격, 제원, 수량 등의 제시 여부 - 설계도면(설비배치도, 공정흐름도, 주요 설비도면 등) - 물질수지는 법적기준항목을 포함하여 제시되었는가?	[ ]	[ ]

■ 신청서 반려 여부 검토(고시 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대상기술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환경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환경적 이익이 있어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 ]	[ ]
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
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 ]
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	[ ]
6	◦이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였는지 여부	해당안됨 [ ]	해당됨 [ ]
7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

신청서 검토 종합결과	
[ ] 적 합 [ ] 보 완 [ ] 반 려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반려 사유	

※ 참고 : 신청서 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

[별지 제2호서식]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3"></td><td rowspan="2">신청구분</td><td rowspan="2">[ ] 신기술 인증
[ ] 기술 검증
[ ] 유효기간 연장</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 rowspan="2">주소(사무실)</td><td colspan="3" rowspan="2">(우: -)</td><td>전화번호</td><td></td></tr>
<tr><td>FAX</td><td></td></tr>
<tr><td rowspan="3">평가업무담당자</td><td colspan="3" rowspan="3">이름 직위</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휴대전화</td><td></td></tr>
<tr><td>FAX</td><td></td></tr>
<tr><td colspan="2">기술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평가등록비</td><td>2,000,000원</td><td>납 부 일</td><td></td><td rowspan="2">납부방법
(해당사항에 ○표)</td><td rowspan="2">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기타 ( )</td></tr>
<tr><td colspan="2">입 금 계 좌</td><td colspan="3">농협중앙회 021-17-002851
예금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td></tr>
</table>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본 평가등록비가 환불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평가등록비를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이 등록서는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증 사본을 이곳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입금일자는 평가대상 등록일자로 관리됩니다)

※ 계산서 발행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송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6>

현 장 조 사 서

1. 신청기술

신 청 인		신청구분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 ]유효기간연장
신청기술명			

2. 현장조사 결과

현장조사일	20 년 월 일 ~ 월 일(일간)
조사장소	
조사 내용 및 결과	

3. 현장조사 위원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현장조사 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붙임 : 현장조사 항목 및 결과

현장조사 항목 및 결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1. 공정 - 신청내용 - 검토의견 2. 기술명 - 신청내용 - 검토의견 3. 신기술 범위 - 신청내용 - 검토의견 4. 신기술인증 요건 - 우수성 1) 기술성능 2) 현장 적용성 - 검토의견 5. 종합 의견	1. 공정 - 신청내용 - 검토의견 2. 개선내용 - 신기술인증 후 개선내용 - 검토의견 3. 기술의 성능 1) 신기술인증 후 운전조건 - 검토의견 2) 신기술인증 후 처리성능 및 효율 - 검토의견 3) 현장적용성 - 검토의견 4) 유지관리 - 검토의견 4.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분석의 필요성 - 시험분석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분석항목 및 횟수 5.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견서

신 청 인	
신청기술	
이해관계인	
심의결과	[ ] 이해관계인 의견 인정 [ ] 이해관계인 의견 불인정
심의의견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5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및 이해관계인

신 청 인	
신청기술명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결과 종합

심의결과	[ ] 인 정 (명) [ ] 불인정 (명)
- 심의의견 종합	

[별지 제6호서식]

관계기관 의견회신서

□ 의견 회신자
- 기관명 및 담당부서명 :
-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전화번호 :

□ 기술명 :

1. 현장개요	공 사 명			
	발주 기관		계약형태	
	현장 위치			
	공사 규모	톤/일		
	신기술적용 공사 규모	톤/일		
	공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공사 금액	백만원	신 기 술 공사금액	백만원
	신 기 술 공사업체명		준공일자	년 월 일 (예정)

2. 신기술 성능 및 적용성

가. 기술의 성능(기존기술과 비교시 향상) 여부

◦기술의 효율성 ([ ] 있음, [ ] 없음)

• 의견 :

◦완성도 ([ ] 있음, [ ] 없음)

• 의견 :

◦중요도([ ] 있음, [ ] 없음)

• 의견 :

◦발전성([ ] 있음, [ ] 없음)

• 의견 :

나. 현장적용성(현장적용 가능여부 및 유사기술 적용경험을 기준으로 서술)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 양호, [ ] 보통, [ ] 미흡)

• 의견 :

◦안전성([ ]양호, [ ] 보통, [ ] 미흡)

• 의견 :

◦유지관리 편의성([ ] 양호, [ ] 보통, [ ] 미흡)

• 의견 :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의 적합성 ([ ] 만족, [ ] 보통, [ ]미흡)

• 의견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있음, [ ] 없음)

• 내용 :

3. 기술 수준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 ]높음, [ ] 보통, [ ] 낮음)

• 의견 :

4. 기타 의견	

◦적용기술의 개선을 위해 수정·보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을 경우 그 기술보유자와 기술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8. 9. 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8. 9. 6>

[별지 제9호서식]

평가수수료 납부확인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td><td>상 호(명칭)</td><td colspan="2"></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주소(사무실)</td><td colspan="5"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FAX</td><td></td></tr>
<tr><td rowspan="3">담당자</td><td colspan="5" rowspan="3">이름 직위</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휴대전화</td><td></td></tr>
<tr><td>FAX</td><td></td></tr>
<tr><td colspan="2">기 술 명</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 rowspan="3">협 약 금 액</td><td>협약기간</td><td colspan="2"></td><td>구분</td><td>평가수수료 납부일</td><td colspan="2">평가수수료
납부금액</td></tr>
<tr><td>평가수수료</td><td colspan="2"></td><td>1회</td><td></td><td colspan="2"></td></tr>
<tr><td>시험분석비</td><td colspan="2"></td><td>2회</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입 금 계 좌</td><td colspan="4">농협중앙회 021-17-002851
예금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td><td>납부방법
(해당사항에
○표)</td><td colspan="2">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기타 ( )</td></tr>
</table>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평가수수료가 환불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이 등록서는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증 사본을 이곳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입금일자는 평가대상 등록일자로 관리됩니다)

※ 계산서 발행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송부

[별지 제10호서식]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10">신청인</td><td>법 인 명(성명)</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연락처
(담당자)</td><td>성명</td><td></td><td>부서(직위)</td><td></td></tr>
<tr><td>전화</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FAX</td><td></td><td>E-mail</td><td></td></tr>
<tr><td>자 본 금</td><td colspan="2">원</td><td>업 종</td><td></td></tr>
<tr><td>매출액(전년도)</td><td>총
매출액</td><td>원</td><td>환경분야
매출액</td><td>원</td></tr>
<tr><td>상시근로자수</td><td colspan="4"></td></tr>
<tr><td>기 술 명</td><td colspan="5"></td></tr>
<tr><td>신청금액</td><td colspan="5">(신청회수 :)</td></tr>
<tr><td rowspan="2">협약금액(천원)</td><td>총액</td><td>평가수수료</td><td>측정분석비</td></tr>
<tr><td></td><td></td><td></td></tr>
</table>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증빙자료 1부.
2. 신청금액의 납입 증빙자료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8. 9. 6>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8. 9. 6>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9. 6>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보유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
기 술 명			
유효기간	~		
대표자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Fax	
E-mail		발급부수	
제출처		용도	
소재지 (활용실적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을곳)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갑지
2. 고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원본(발주처 또는 원도급자 확인 필)
   -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기성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생략 가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9. 6>

발급용도	□ PQ □ 보관	발급번호	0000-00
		제출처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인증번호)	

■ 활용실적

인증번호	활용년도	발급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합계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인증번호	활용년도	발급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

기 술 보 유 자					
신 기 술 인 증 서	제 호	기술검증서	제 호	유효기간	~
기 술 명					
기 술 개 요					

기술검증시 조건	
시 설 명	
시 설 소 재 지	
시 설 구 분	[ ]실증시설 [ ]모형시설
처 리 용 량	
검 증 기 간 및 평 가 횟 수	

현장적용 인정 규모	
기 술 분 야	[ ]하폐수처리기술(100배) [ ]기타기술(10배)
규 모	이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검증서가 교부된 위의 기술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단,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연장 관계기관 의견회신서

1. 적용 기술 개요

□ 기술명 :

□ 기술보유자 :

□ 의견 회신자

- 소속기관 및 부서명 :
-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전화번호 :

□ 현장적용 내용

<table>
<tr><td colspan="2">공 사 개 요</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준 공 일 자</td><td>년 월 일 (예정)</td><td>검토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 rowspan="8">현
장
개
요</td><td>공 사 명</td><td colspan="3"></td></tr>
<tr><td>발주 기관</td><td></td><td>계약형태</td><td></td></tr>
<tr><td>현장 위치</td><td colspan="3"></td></tr>
<tr><td>공사 규모</td><td colspan="3"></td></tr>
<tr><td>신기술적용
공사 규모</td><td colspan="3"></td></tr>
<tr><td>공사 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td></tr>
<tr><td>공사 금액</td><td>백만원</td><td>신 기 술
공사금액</td><td>백만원</td></tr>
<tr><td>신 기 술
공사업체명</td><td></td><td>감리업체</td><td></td></tr>
<tr><td colspan="5">전체 공사 중 적용된 신기술의 특기사항</td></tr>
<tr><td colspan="5"></td></tr>
</table>

2. 신기술 적용에 대한 검토결과

가. 공사발주시 기대효과와 공사완료후 공사효과 비교 ([ ] 만족, [ ] 보통, [ ] 미흡)
나.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교 ([ ] 만족, [ ] 보통, [ ] 미흡) - 공 사 비 : ( )백만원, - 공사(예정)기간 : ( )개월간 - 공사개요 :
다. 계획대비 적용이행 여부 ([ ] 만족, [ ] 보통, [ ] 미흡)
라. 신기술 적용시 문제점 ([ ] 해당 없음, [ ] 경미한 사항, [ ] 매우 심각)
마. 유지관리 용이성 (현장적용시방서 및 운전절차서 참고) ([ ] 만족, [ ] 보통, [ ] 미흡)
바. 하자보수 사례 ([ ] 해당 없음, [ ] 경미한 사항, [ ] 매우 심각)
사.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안전관리, 소음, 진동, 환경오염, 주민호응도 등) ([ ] 만족, [ ] 보통, [ ] 미흡)

3. 신기술 적용에 대한 의견

가. 타 발주기관이 본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고려할 사항

- 공사기획시 :

- 공사발주시 :

- 공사시공시 :

- 공사준공후 유지관리, 점검시

나. 종합의견(신기술을 적용한 전문가로서의 소견)